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5,192,147	15,155,764
일반회계	478,594,651	14,357,840
특별회계	26,597,496	797,925
공기업특별회계	14,142,007	424,260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42,007	424,260
기타특별회계	12,455,489	373,6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6,375	19,391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18,641	36,5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87,458	32,624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541,652	16,2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61,363	268,8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78,19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